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기술유출 범죄의 법정형 수준 상향〉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87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 확대 .....     | 3  |
| 2.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칙체계 강화 ..... | 6  |
| 3. 몰수·추징 절차 규정 신설 .....      | 14 |
| ※ 참고자료 .....                 | 20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5.
3. 회 부 일 : 2026. 2. 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외 유출에 대하여 가중 처벌체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행선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나 평균 선고형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등, 현행 법정형만으로는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침해범죄에 대한 법정형(징역·벌금)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 Ⅲ. 검토의견

#### 1.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 확대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지정대상기술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한 제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표 1]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생략)                                                                                                                                 |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u>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u> 한다. | ② -----<br>-----<br>-----<br>-----<br>-----<br>-----선<br><u>정하여야</u> -----. |
|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9조<sup>1)</sup>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핵심기술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할 때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기술 보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를 보다 폭넓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최근 기술패권 경쟁 심화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 보호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경우 수출, 해외 인수·합병, 외국인 투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자, 해외 공동연구 등과 관련하여 승인·신고 등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해외 투자·연구협력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규제 확대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문구의 삭제 필요성 및 지정 범위 확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및 산업경쟁력 보호 필요성과 기업 활동 및 기술개발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경우 보유기관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국가핵심기술 지정 범위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사입법례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sup>2)</sup> 역시 방위산업기술의 지정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문구 삭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2.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칙체계 강화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및 일반 유출행위 등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행위를 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안 제36조제1항),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며(안 제36조제2항),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금지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안 제36조제3항),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 역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며(안 제36조제4항),

제3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또한, 기술유출 범죄의 예비·음모죄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하여,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안 제37조제1항),

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안 제37조제2항),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9항 신설).

[표 2]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3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u>65억원</u>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제36조(벌칙) ① -----<br>-----<br>-----<br>----- <u>7년</u> -----<br>----- <u>100억원</u> -----<br>-----. |
|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u>1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0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br>-----<br>-----<br>-----<br>----- <u>20년</u> -----<br>----- <u>60억원</u> -----<br>-----. |
| 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10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0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br>-----<br>-----<br>----- <u>15년</u> ----- <u>20억원</u> -----<br>-----.                   |
| 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br>-----<br>----- <u>7년</u> ----- <u>7억원</u> -----<br>-----.                              |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br>-----<br>-----<br>----- <u>5억원</u> -----.                                              |

현행법 제36조<sup>3)</sup>는 국가핵심기술 여부 및 외국에서의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단계적인 벌칙체계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표 3]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안 제36조제1항~제4항)

| 구 분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항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 3년 ↑ 징역 / 65억 ↓ 벌금                   | <u>7년</u> ↑ 징역 / <u>100억</u> ↓ 벌금          |
| 제2항 | 산업기술 해외 유출                 | 15년 ↓ 징역 또는 30억 ↓ 벌금                 | <u>20년</u> ↓ 징역 또는 <u>60억</u> ↓ 벌금         |
| 제3항 | 기술 유출                      | 10년 ↓ 징역 또는 10억 ↓ 벌금                 | <u>15년</u> ↓ 징역 또는 <u>20억</u> ↓ 벌금         |
| 제4항 | 그밖의 기술 유출<br>(목적외사용·중대한과실) | 3년 ↓ 징역 또는 3억 ↓ 벌금                   | <u>7년</u> ↓ 징역 또는 <u>7억</u> ↓ 벌금           |
| 제6항 | 비밀누설·도용                    | 5년 ↓ 징역 또는 10년 ↓ 자격정지<br>또는 5천만 ↓ 벌금 | 5년 ↓ 징역 또는 10년 ↓ 자격정지<br>또는 <u>5억</u> ↓ 벌금 |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기술유출 우려와 경제적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행 처벌체계만으로는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2025년 개정<sup>4)</sup>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수준을 이미 강화<sup>5)</sup>한 바 있으며, 최근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에서 2심 단계에서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6)</sup>.

4) 2025. 1. 21. 개정 / 2025. 7. 22. 시행

5)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15억원→65억원 /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 15억원→ 30억원

6) 최근 기술유출 사건 처벌사례

| (반도체 분야)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유출 사건 |                                                                                                                      |      |                                                |
|---------------------------------|----------------------------------------------------------------------------------------------------------------------|------|------------------------------------------------|
| 유출자                             | 국내 반도체 대기업 ㄱ사 출신 A씨 및 ㄱ사 협력업체 임직원 B씨 등                                                                               |      |                                                |
| 피해기업                            | 국내 반도체 대기업 ㄱ사                                                                                                        |      |                                                |
| 유출기술                            | ① <b>국가핵심기술</b> (18나노 D램 관련 공정순서도), ② <b>국가핵심기술</b> (GBC 모듈 상세 공정정보), ③ <b>첨단기술</b> (반도체 증착장비 관련 기술정보)               |      |                                                |
| 유출방식                            | A씨와 B씨 등이 ㄱ사의 반도체 국가핵심기술(D램 설계·공정·소자기술 등)과 첨단기술(반도체 증착장비 제작 및 조립도면, 장비 매뉴얼 등)을 출력물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중국 반도체기업 ㄴ사로 유출 |      |                                                |
| 진행상황                            | ㄱ사 출신 A씨 및 ㄱ사 협력업체 직원 B씨, 2심 선고 후 대법원 파기환송심(26.4)<br>ㄱ사 출신 C씨, 1심 선고                                                 |      |                                                |
| 처벌                              | <피고인별 세부 판결 형량>                                                                                                      |      |                                                |
|                                 | 구분                                                                                                                   | 피고인명 | 판결 형량                                          |
|                                 | 주범                                                                                                                   | A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4개월 및 벌금 2억원           |
|                                 | 공범                                                                                                                   | B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9개월                    |
|                                 |                                                                                                                      | C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1심)                    |
|                                 |                                                                                                                      | D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
|                                 |                                                                                                                      | E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
|                                 |                                                                                                                      | F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산업통상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법정형 하한보다는 상한을 중심으로 처벌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처벌 수준 역시 해외 주요국<sup>7)</sup>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려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sup>8)</sup>과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경제안보상 중요한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별도의 처벌체계를 마련하려는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sup>9)</sup>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관련 개정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7) 기술유출 관련 해외 주요국 처벌 수준

| 국가  | 대상행위                                             | 처벌 수준                                               | 비고       |
|-----|--------------------------------------------------|-----------------------------------------------------|----------|
| 미국  | 영업비밀을 외국 정부·기관 등의 이익이 될 것을 알거나 의도한 절취·복제·전달 등 행위 | 20년 이하 징역, 500만달러 (약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 일본  |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 또는 알면서 침해·유출하는 행위              | 10년 이하 징역, 3천만엔(약 28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 대만  |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중국·홍콩·마카오 사용 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 12년 이하 징역, 1억 대만달러 (약 45억원) 이하 벌금                   |          |
| 중국  | 영업비밀을 외국을 위해 불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병과,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벌금 병과 | 벌금 상한 없음 |
| 독일  | 영업비밀을 외국 공개하는 등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벌금 상한 없음 |
| 영국  | 영업비밀을 외국을 위해 취득·공개하는 등 행위                        | 14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벌금 상한 폐지 |
| 프랑스 | 영업비밀준수 의무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7만5천유로 (약 6.5억원) 이하 벌금                 |          |
| 호주  | 영업비밀을 외국 정부·기관을 위해 절취하는 등 행위                     | 15년 이하 징역                                           |          |
| 캐나다 | 영업비밀을 외국 경제주체의 지시·이익·연계로 전달·취득·보유·변경·파괴하는 행위     | 10년 이하 징역                                           |          |

자료: 산업통상부

8) 의안번호 제2216588호, 김원이의원 대표발의(2026. 2. 5.)

9) 의안번호 제2217218호, 장경태의원 대표발의(2026. 3. 4.)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체계를 두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징역형 하한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3년 이상)보다 높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sup>10)</sup>,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간 단계적 보호체계와 벌칙체계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기술유출 범죄의 중대성과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벌 강화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안 제36조제1항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 상향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법률간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 현

---

1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0조(벌칙)**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5조 각 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36조제2항(산업기술 해외유출)과 관련해서는 징역형 상한 상향에는 찬성하나, 벌금형을 “6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벌금형이 “65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벌칙 상향에 대해서는 기술유출 범죄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과, 안 제36조제6항의 비밀누설·도용죄의 벌금형은 제3항 및 제4항의 상향률(약 2배)을 고려하여 “5억원 이하”보다는 “1억원 이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몰수·추징 절차 규정 신설 및 예비·음모죄 벌칙 상향

개정안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9항 신설).

또한, 기술유출 범죄의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안 제37조제1항),

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의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표 4]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6조(벌칙) ① ~ ⑧ (생략)<br><신설> | 제36조(벌칙) ① ~ ⑧ (현행과 같음)<br>⑨ 제5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

|                                                                                                    |                                                                                  |
|----------------------------------------------------------------------------------------------------|----------------------------------------------------------------------------------|
|                                                                                                    |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
| 제37조(예비·음모)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조(예비·음모) ① -----<br>-----<br>----- <u>7년</u> -----<br>----- <u>7억원</u> -----. |
| ② 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br>----- <u>5년</u> -----<br>----- <u>3억원</u> -----<br>-----.             |

먼저, 현행법 제36조제5항<sup>11)</sup>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 등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두고 있음.

기술유출 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해외 송금 및 차명재산 등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몰수·추징의 절차적 사항과 관련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 절차의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제36조제5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sup>12)</sup>을 준용

1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제10조의3(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구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하도록 규정하여,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몰수·추징 절차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부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음으로, 현행법 제37조<sup>13)</sup>는 제36조제1항(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또는 제2항(산업기술 해외유출)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제11조(국제 공조)** 특정범죄와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 보전(保全)의 공조(共助)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공조 요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가 대한민국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범죄 또는 제3조 및 제4조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같은 종류의 공조 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한다는 취지의 공조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예비·음모)**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6조제3항(일반 기술유출)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기술유출 범죄의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술유출 범죄는 실제 유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행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 단계부터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다만 예비·음모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로서 기수범에 비해 책임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수범 및 미수범과의 단계

적 형벌체계<sup>14)</sup> 및 책임 비례원칙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비·음모 단계부터의 처벌 강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비·음모죄의 법정형을 미수범에 준하는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안 제37조제1항은 죄질이 다른 제36조제1항(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과 제2항(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예비·음모죄 상한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벌칙 체계와 같이 단계적으로 차등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              |
|--------------|
| 문 의 처        |
| 02)6788-5457 |

14)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라. 삭제 <2025. 1. 21.>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차. 「해양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물신기술

카.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참고 2

## 최근 주요 기술유출 사건 처벌사례

### □ (반도체 분야) 반도체 HKMG 핵심기술 유출

|      |                                                                                                                |
|------|----------------------------------------------------------------------------------------------------------------|
| 피해기업 | 국내 반도체 대기업 ㄱ사                                                                                                  |
| 유출기술 |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 유출방식 | ㄱ사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가 퇴사 직전 도중 반도체 공정 관련 자료 4,000여 장을 출력 후 무단 반출하여 중국 IT 기업 ㄴ사에 유출                              |
| 진행상황 | 대법원 판결 확정('25.8)                                                                                               |
| 처벌   | 1심('24.11) :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선고<br>2심('25.5) :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선고<br>3심('25.8) :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 확정 |

### □ (디스플레이 분야) 스마트폰 OLED 엠티패널 기술 유출사건

|      |                                                                                                                     |                       |                                  |
|------|---------------------------------------------------------------------------------------------------------------------|-----------------------|----------------------------------|
| 피해기업 | 국내 디스플레이 대기업 ㄱ사                                                                                                     |                       |                                  |
| 유출기술 | ① 영업비밀(OLED 곡면 합착기술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                       |                                  |
| 유출방식 | ㄴ사의 대표인 A씨는 ㄱ사와 공동개발한 OLED 엠티패널 설비 관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ㄱ사의 반대로 무산되자 A씨의 가족 명의로 별도의 법인 ㄷ사를 설립한 후 중국 ㄹ사로 우회 수출을 시도 |                       |                                  |
| 진행상황 | 대법원 판결 확정('23.7)                                                                                                    |                       |                                  |
| 처벌   | <피고인별 세부 판결 형량>                                                                                                     |                       |                                  |
|      | 구분                                                                                                                  | 피고명                   | 판결 형량                            |
|      | 주범                                                                                                                  | A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
|      | 공범                                                                                                                  | B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
|      |                                                                                                                     | C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
|      |                                                                                                                     | D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      |                                                                                                                     | E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                                                                                                                     | F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                                                                                                                     | G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                                                                                                                     | H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
|      |                                                                                                                     | I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
|      | 양벌                                                                                                                  | ㄴ사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
| ㄷ사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                                  |

□ (자동차분야) 자율주행 관련 라이다(LIDAR) 기술 유출 사건

|      |                                                                                                                                                                                   |
|------|-----------------------------------------------------------------------------------------------------------------------------------------------------------------------------------|
| 피해기업 | 국내 소재 ㄱ대학                                                                                                                                                                         |
| 유출기술 | ① <b>첨단기술</b> (스마트카 분야 차량용 레이저 레이더 기술), ② <b>첨단기술</b> (시스템 분야 지사본사 간의 안전한 네트워크 접속기술 및 종단간 암호화 기술), ③ <b>첨단기술</b> (소자·모듈 분야 Access Network용 DSP 등), ④ <b>영업비밀</b> (레이더 기술 관련 연구자료) |
| 유출방식 | ㄱ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A씨가 ㄱ대학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권한을 중국 ㄴ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들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 하여 라이다(LIDAR) 연구자료 등 첨단기술을 유출                                                               |
| 진행상황 | 대법원 판결 확정('24.5)                                                                                                                                                                  |
| 처벌   | 1심('21.8) : 사기·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br>2심('24.2) :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어 A씨 징역 2년 선고<br>3심('24.5) :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b>징역 2년</b> 확정 판결                                |

### 참고 3

### 기술유출 관련 해외 주요국 처벌 수준

- **(미국)** 영업비밀을 외국 정부·기관 등의 이익이 될 것을 알거나 의도한 절취·복제·전달 등 행위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 500만 달러(약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Economic Espionage Act, 18 U.S.C. §1831)
- **(일본)**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 또는 알면서 침해·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3천만엔(약 28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부정경쟁방지법 제21,22조)
- **(대만)**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중국·홍콩·마카오 사용 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12년 이하 징역, 1억 대만달러(약 45억원) 이하 벌금**(국가안전법)
- **(중국)** 영업비밀을 외국을 위해 불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병과,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벌금** 병과(형법)
  - \* 벌금 상한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관이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독일)** 영업비밀을 외국 공개하는 등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영업비밀보호법)
  - \* 독일 형법 체계상 벌금형의 상한선이 법률에 특정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음
- **(영국)** 영업비밀을 외국을 위해 취득·공개하는 등 행위에 대해 **14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National Security Act)
  - \* 「법률구조, 양형 및 범죄자 처벌법」 개정('15.3)에 따라 기존 5천파운드(약 1천만원)의 벌금액 상한 폐지